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 라 합니다)를 설정한 기업자와 수탁자 한국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자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를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입자'란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원칙을 갖수의자를 말합니다.
 - 가. 퇴직금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 나.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퇴직연금제도의 기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추구하고 설정하는 자
 - 라.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마.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아. '국회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회의원
 - 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원
 - 차. '법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법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기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기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리거계약'이라 함은 제27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기업자나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기되는 날입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기업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자나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7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금여제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의 예)

- ① 기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금여제도의 퇴직자산을 신설험합니다.
- ② 기업자는 퇴직자산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설험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서 기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설험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기 기업자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자축계약에서 이 계약으로의 이체를 포함하는 사유로 다른 자산리거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제7항 및 제27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턴은 추가로 신설험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신탁기기)

선탁기기는 신설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설험계약 이전일, 제20조에 의한 신설험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기준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조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운용관리기관에 연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설험계약 이전일, 신설험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기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설험계약 이전일, 신설험계약 이전일, 신설험 종료일 또는 최종연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기로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신탁관계인)

- ① 이 신설험기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에게 한합니다.
- ② 이 계약의 일부분 및 이의 수의자는 기업자로 합니다.
- ③ 수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의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운용관리기의 신고)

- ① 기업자는 운용관리기원을 지정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원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원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설험금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설험자신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설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0조에 의한 신설험 종료일에 대한 통지·운송·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토지자(한국)을 받아 입무를 수행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운용관리기원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탁자산의 운용)

- ① 신설험자를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기업자는 신설험자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원에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원의 통지에 따라 신설험자산을 운용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여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원에 통보합니다.
- ④ 제7항 및 제27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험자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7항에 의한 운용관리기원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자금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환매조건부구매매수계약, 은행예금, 발행여행, IMDA,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등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이 신설험자산을 다른 신설험자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8조 (원본과 이의의 보전)

이 신설험은 일본본과 이의를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탁자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설험자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원본금)

이 신설험에 있어서 제27항의 최초 신설험금은 신설험원본금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추가 수익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신설험원본금에 기산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자금, 제20조에서 정한 신설험 종료일에 신설험자산이 종료될 때에는 운용관리기원의 통지에 따라 신설험원본금에 기산합니다.

제11조 (신탁자산의 표시)

신탁자산에 대해서는 신설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설험자산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자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설험자산을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설험자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기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보관수수료)

- ① 회사는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자) 자산보관(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②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IRP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산보관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기업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리기원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설험자산을 매각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기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7항에서 운용관리기원과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기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설험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인 한은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기업자의 중도인출 사유로 발생한 경우, 운용관리기원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설험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자가 신설험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리거계약으로 급여 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 ⑤ 제7항 및 제27항에 의한 신설험금의 자금은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 신설험금과 관련한 세제금 창출절차가 안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⑥ 회사는 운용관리기원에서 군여의 자금통장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연기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입에 상장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내에 부여되는 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에 배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로자부금에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아율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복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제 배당형 상품에 유통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금리로 되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자금액"이라 한다)과 "실제 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⑦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설험자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설험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기업자, 운용관리기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 까지 신설험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 임대 퇴직제공 및 종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권리와 책임을 받는 임도는 일정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원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 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종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① 기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자의 계약 관리 사항이 7개나 이상 중으로 하위사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3. 제7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와 함께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시합니다.
 4.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능하여 종도인출할 경우에는 특별통도해지로 처리합니다.
 5. 세부항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충돌하여 회사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서면으로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운용관리기원의 통지에 따라 신설험자산을 전자로 매각하여 기업자에게 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6. 이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원의 통지에 따라 신설험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7. 중도해지에 따른 신설험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4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신탁자(회사)의 사임)

- ① 회사는 수탁방법에 따른 정기적인 통지가 있는 한 기업자와의 승진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위에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임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기업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전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기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개인적 이전)

- ① 기업자는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개인적 이전"이라 합니다) 신설험할 수 있습니다.
- ②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은 연금기축계약으로 계약이전을 신설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원에서 개인적 이전을 허가한 날로부터 일정일까지 기업자를 받을 때까지 기업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입에 상장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거나 지정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자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통도해지로 처리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0조(연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합니다.
- ⑤ 제7항의 자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자금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할 적립금에 대한 통지에 포함되거나 지정됩니다. 단, 실제 배당형 상품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자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7항의 자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자금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할 적립금에 대한 통지에 포함되거나 지정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합니다.

제20조 (신탁금의 종료)

- ① 이 신설험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원의 통지에 따라 신설험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험금을 위하여 청사나무가 필요한 경우 신설험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 ③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설험자산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도 신설험자산을 신설험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 (퇴직금수령의 등원 및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설험의 지급에 따른 퇴직금수령 및 연금수령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주의의무)

회사는 신설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설험자산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기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명된 확인서(수탁인감, 패수위드 등)에 기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탁과 육안에 의하여 신설험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을 확인한 후에 기업자로부터의 자금·정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기업자로부터의 자금·정구·통지·신청 및 정보를 수령하여 청사나무가 필요한 경우 신설험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3. 기업자의 자금·정구·통지에 기초한 신설험자산처리
 4. 청사나무·운송·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토지자(한국)을 받아 입무를 수행합니다)을 받은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할 적립금에 대한 통지에 포함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합니다.
 5. 운용관리기원의 통지에 기초한 신설험자산처리
 6. 운용관리기원의 통지에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행정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원의 통지자금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중하는 경우
- ②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감자 매체전자금(증여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사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7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로 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기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신설험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신설험자산에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기업자가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는 단순한 사항의 변화로 통지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제7항의 통지가 할 경우 기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보리(신탁)계약의 시행일(일자)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⑦ 기업자가 제7항의 통지가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보리(신탁)계약의 시행일(일자)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⑧ 회사는 자산보리(신탁)계약을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기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보리(신탁)계약을 조작하고 디온로드(화면복사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⑨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제7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신고사항)

- ① 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세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한 절차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거래증명·등록증명·증명서·도장·훼손하였거나 변조된 경우
 2. 기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사망·행방·능력의 변동·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 (신고사항)

- ① 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로 인해 운용관리기원의 통지에 정한 대로 신설험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원에게 손실보상 방법을 회사의 다른 기업자와 치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로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면제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 ①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기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기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기업자와 치분으로 결정합니다.

제29조 (조회와 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의 각 호의 해석에 관하여 기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기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체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로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가입자 일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입니다)와 한국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	--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장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기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장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체자산평기액에 자산관리 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자산관리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체금지급일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일의 경우에는 최종연금 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일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체증정일의 경우에는 신체증정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이전일 최종연금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체증정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체자산평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제도시행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부터 4차년도	10%
5차년도부터 10차년도	15%
11차년도 이후	20%

5. 기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신체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자산 매각 금액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사에 따릅니다.
6. 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체자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기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3호의 신체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 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와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기입자의 개인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이 경우 면제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일별 신체자산평기액 평균잔액 대비 개인부담금기액의 비중(수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합계만큼 면제합니다.
 - 기입자가 회사에 연금개시신청 후 최초 연금을 수령한 날부터 제1항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서명)

당사 주소

회사명

영업점

② 기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체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로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가입자 이름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입니다)와 한국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본 계약서를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	--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장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기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장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체자산평기액에 자산관리 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자산관리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체금지급일,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일의 경우에는 최종연금 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체종료일의 경우에는 신체종료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이전일, 최종연금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체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체자산평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일별 신체자산평기액	수수료율 (연)
전 구간	0.10%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제도시행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부터 4차년도	10%
5차년도부터 10차년도	15%
11차년도 이후	20%

5. 기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신체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자산 매각 금액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 기관의 지사에 따릅니다.
6. 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체자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기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3호의 신체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 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 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와 운용관리 기관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기인자의 개인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이 경우 면제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일별 신체자산평기액 평균잔액 대비 개인부담금기액의 비중(수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합계만큼 면제합니다.
 - 기입자가 회사에 연금개시신청 후 최초 연금을 수령한 날부터 제1항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서명)

당사 주소

회사명

영업점